

경영학부 학술 소모임 지원비 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학술 소모임(이하 "소모임"이라 한다) 지원비의 지급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

- ① 경영학부 소속의 소모임으로서 경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및 활동하는 소모임이어야 한다.
- ② 학술 소모임에 지도교수가 있어야 하며, 지도교수는 경영학부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.
- ③ 소모임은 한 학기에 적어도 5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개최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비의 지급)

- ① 지원비는 매 학기마다 지급되고, 소모임에 소속된 경영학부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.
 1. 경영학부 소속 학생의 수가 3~10명인 경우: 한 학기에 15만원 이하
 2. 경영학부 소속 학생의 수가 11~20명인 경우: 한 학기에 30만원 이하
 3. 경영학부 소속 학생의 수가 21명 이상인 경우: 한 학기에 45만원 이하
- ② 지원비 신청시 직전 학기의 소모임 활동실적과 당해 학기의 소모임 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평가하여 지원비 지급금액을 결정한다. 다음과 같은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 1. 외부 공모전에서 수상실적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학교 위상을 높인 경우
 2. 기타 위와 유사한 활동이 있는 경우
- ③ 소모임이 결성된 첫 학기에는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④ 지급되는 지원비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